

# 교육혁신원 규정

- 제정 : 2020. 3. 1.
- 개정 : 2020. 11. 9.
- 개정 : 2021. 7. 30.
- 개정 : 2021. 12. 1.
- 개정 : 2022. 3. 1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교육혁신원은 대학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에 따른 전공, 직업기초·교양,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역량강화,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
2. 직업기초·교양 교육과정 운영 성과 관리
3. 현장중심 전공 교육과정 운영 성과 관리
4.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
5. 원격교육 지원 운영 성과 관리
6.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**제3조(원장)** ① 교육혁신원장(이하 “원장”)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며,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교육혁신원에는 직업기초·교양교육센터, 역량교육센터, 교수학습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.

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센터의 업무 수행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센터 단위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④ 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위원회)** ① 교육혁신원에는 교육과정품질관리위원회,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육과정품질관리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 3 장 재 정

**제10조(재정)**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총당한다.

**제11조(예산 및 결산)** 본 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해산)** 본 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㉔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